##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후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578

발의연월일: 2024. 9. 3.

발 의 자:윤후덕・이훈기・김정호

임오경 · 최기상 · 차지호

정준호 · 김주영 · 홍기원

박 정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도서관, 과학관, 박물관, 미술관 등에 입장하게 하는 경우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규정을 두고 있음.

그런데 「문학진흥법」에 따른 문학관 역시 관람료나 문학관 자료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,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 및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학관 입장 시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문학관에 입장하게 하는 경우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을 부가가 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제1항제17호).

법률 제 호

##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1항제17호 중 "미술관"을 "미술관, 문학관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제1 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6조(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	제26조(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		
대한 면세) ① 다음 각 호의	대한 면세) ①		
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			
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			
1. ~ 16. (생 략)	1. ~ 16. (현행과 같음)		
17. 도서관, 과학관, 박물관, <u>미</u>	17 <u>u</u> ]		
<u>술관</u> , 동물원, 식물원, 그 밖	술관, 문학관		
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			
입장하게 하는 것			
18. ~ 20. (생 략)	18. ~ 20. (현행과 같음)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